

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1월 2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체육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연장 요구됨
-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사업에 기금사업 활용관련 근거마련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기간 삭제 및 존속기한 연장(제12조, 제13조)
-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(제15조)
- 기금 사용 제한사항 설정 변경(제15조 제3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기간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,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,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,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 내용으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야외활동”을 “야외 운동”으로, “신체적 활동”을 “신체 활동”, “배양하고”를 “기르고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국민체육 진흥법」”을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전문 체육진흥”을 “전문체육 진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의2제1항 중 “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,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

제15조제2항 중 “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

없으며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8조 중 “「평창군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체육”이란 <u>운동경기·야외 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</u>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<u>배양하고</u>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·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야외 운동</u> ----- <u>신체 활동</u>----- ----- <u>기르고</u> ----- -----.</p> <p>2·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설치) 「<u>국민체육진흥법</u>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</u>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하에 <u>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	<p>제3조(설치) 「<u>국민체육진흥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의2(전문체육의 지원) ① 군수는 <u>전문 체육진흥을 위하여</u>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의2(전문체육의 지원) ① ----- ----- <u>전문체육 진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기금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조성한다.</u></p>	<p>제12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제13조(기금의 관리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제13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)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기금의 사용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6. (생략)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

제13조(기금의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) ① -----
- 협의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기금의 사용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 훈련 유치,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-----
-- 제1항-----

사용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
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「평창
군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-----.

③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
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
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목표
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
한다.

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
----- 「평창
군 재무회계 규칙」-----.